

※ 적용시기 : 2023. 6. 22. 입찰공고분 부터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직노) x 올

건축

산업설비
(건축)

[기타경비]

(재+노) x 올

건축

산업설비
(건축)

공사규모
(추정가격)

(재+노+경) x 올

건축, 산업설비

전문-전기·통신·소방·기타

(노+경+일) x 올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7~12개월 (365일)
13~36개월 (1095일)
36개월 초과 (1096일)

12.2
12.2
12.0
11.7

12.2
12.2
12.0
11.7

5.8
5.7
6.0
5.8

5.8
5.7
6.0
5.8

5억 미만

5억 - 30억 미만

30억 - 50억 미만

50억 - 100억 미만

100억 - 300억 미만

300억 -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7~12개월 (365일)
13~36개월 (1095일)
36개월 초과 (1096일)
6개월 이하 (183일)
7~12개월 (365일)
13~36개월 (1095일)
36개월 초과 (1096일)

12.2
12.2
12.0
11.7
11.7
11.5
11.5
11.2

12.2
12.2
12.0
11.7
11.7
11.5
11.5
11.2

5.8
5.7
6.0
5.8
5.8
6.1
6.1
5.9

5.8
5.7
6.0
5.8
5.8
6.1
6.1
5.9

5.0

5.0

4.5

9.0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7~12개월 (365일)
13~36개월 (1095일)
36개월 초과 (1096일)

11.1
11.1
10.9
10.5

11.1
11.1
10.9
10.5

5.6
5.6
5.9
5.6

5.6
5.6
5.9
5.6

4.5

9.0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선료 등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산재보험료]

(노) x 3.7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1-95호(2021. 12.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고용보험료]

(노) x 올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1등급] 1200억 이상
[2등급] 1200억 미만 ~ 950억 이상
[3등급] 950억 미만 ~ 550억 이상
[4등급] 550억 미만 ~ 400억 이상
[5등급] 400억 미만 ~ 220억 이상
[6등급] 220억 미만 ~ 130억 이상
[7등급]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7등급 미만

1.57
1.30
1.13
1.06
1.03
1.02
1.01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19-244호, 2018.1.1.)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직노) x 3.545
(건강보험료) x 12.81
(직노) x 4.5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퇴직금제부금비]

(직노) x 2.3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 x 올

구분

요율

도로(예시: 교량, 터널, 활주로 등)
플랜트(예시: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지하철
철도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항만(간척, 준설):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
항만(간척, 준설):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
댐
택지개발
기타 토목(하천 등)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택(신축)
주택 외 건축
조경, 기타(전문, 개보수 공사)

0.9
0.4
0.5
1.5
0.5
1.8
0.8
1.1
0.6
0.8
0.7
0.3
0.5
0.3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정단가, 표준품질 등에 의해 산출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직접공사비) x 올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구분

요율

구분

요율

건축공사

0.07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산업·설비공사

0.16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32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0.10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를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직접공사비) x 올

공사규모(추정가격)

요율

50억 미만

0.081

50억 이상 - 100억 미만

0.080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0.075

300억 이상 종심·총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0.071

300억 이상 종심·총평제(건축)

0.068

터기·대안공사

0.084

* 적용제외: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수수료

70억 미만

[직공비×0.0141%]×공기(년)

70억이상~120억미만

[1백만원+(직공비-75억)×0.0102%]×공기(년)

120억이상~250억미만

[1.5백만원+(직공비-130억)×0.0077%]×공기(년)

250억이상~500억미만

[2.4백만원+(직공비-250억)×0.0063%]×공기(년)

500억 이상

[4백만원+(직공비-500억)×0.0050%]×공기(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200억 이상의 공사의 계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 x 올

□ 도급자관급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 x 올과
(재+직노) x 올 x 1.2 중에 작은 금액

안전관리비 대상액^{주)}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5억 ~ 50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6
1.99
2.35
1.57
1.20

5,349
5,499
5,400
4,411
3,250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97
2.10
2.44
1.66
1.27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15
2.29
2.66
1.81
1.38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주)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재료비(도급자관급 제외)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 건설업의 분류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부설하는 공사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석도건설공사

- [중건설공사] 고제방(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하)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과선교, 승선선로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 조정(조정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

□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은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직행기준」 제9조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중역위 계약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 추정가격 10억미만은 01.13%(037%)미만인 경우: 01.13%(037%) - 추정가격10억 ~ 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 추정가격50억 ~ 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	--	---

위 적용기준 중 법정경비의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를 생략합니다.

법정경비 관련 규정

구분	소관부처	관련규정 링크	비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및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산정기준/(2019-286,2019061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2016-921,20161219)	
환경보전비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환경관리비의산출기준및관리에관한지침/(2018-528,20180830)	
산재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18-462,20180726)	
	고용노동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1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2020-145,20201229)	
고용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18-462,20180726)	
	조달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조달청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2021-9,20210412)	
건강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18-462,20180726)	
	보건복지부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210406,31614,20210406)/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18-462,20180726)	
	보건복지부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20210101,31322,20201229)/제4조	
연금보험료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사회보험의보험료적용기준/(2018-462,20180726)	
	보건복지부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20210101,17758,20201229)/제88조	
퇴직공제부금비	국토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소요금액산정기준/(2015-610,20150820)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제외한 법정경비에 대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참조하시고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